

8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번복 사건



news1
KOREA

이상훈 기자

뉴스1 ☒ 구독중**[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반복한 판사**입력 2017.01.18. 오전 7:01 · 수정 2017.01.18. 오전 9:57 기사원문 이상훈 기자 208 314    

2017년 1월 선고 도중 피고인의 난동으로 한 법정에서 두번의 선고를 내린 일명 ‘1법정2선고’ 사건이 발생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례없는 희한한 판결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실체를 추적해 항소심과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과정을 취재하면서, 판결과정의 허점을 지적해볼 기회를 누렸고, 또 바로잡힌 결과를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 경력의 행운이다. 이 보도 과정에서는 우연하게도, 혹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복 덕분인지 평소 신뢰하던 유력 취재원인 검사, 변호인, 판사 등의 이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시기에 주요 제보와 조언 등을 들을 수 있

었다.

바로잡힌 판결부터 소개한다. 2024년 8월30일 ‘파기환송심’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선고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원심 판결은 무려 8년 전인 2016년 9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선고됐다.

8년 전 당시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 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낭독했다. 그 직후 한 씨가 “재판이 개판이야. 뭐 이 따위야”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씨는 검사의 구형과 똑같은 형량의 판결이 선고되자 흥분해 이 같이 돌발행동을 했다고 후에 설명했다.

법정 난동이 발생하면 법정경위가 제지하고 재판장은 즉결심판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유례없는 행위를 했다.

김 판사는 법정경위들이 제압해 법정 밖으로 나간 한 씨를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다시 판결 주문을 읊었다. 그는 조금 전 선고한 징역 1년보다 3배 높은 ‘징역 3년’을 재선고했다. 즉석에서 형량을 번복한 것으로, 이 사건은 나의 최초 보도 이후 1법정 2선고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유례없는 판결이다.

나는 원심 판결이 선고되고 5개월쯤 지난 2017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제보 받았다. 제보자는 나와 평소 신뢰 관계가 돈독한 A 검사였다. 그는 ‘전대미문의 판결 번복’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그 시기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한 달쯤 남은 시점이었다.

원심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니 양형 이유 말미에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

판사 “선고 도중 피고인 난동 부려 형량 정정 선고”

(의정부=뉴스1) 이상훈 기자 = 형사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영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52)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형량이 무려 3배나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B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징역형’을 두 번 선고했다.

한번은 징역 1년, 다음번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적었다.

‘1법정 2선고’에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오는 2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내가 ‘영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영터리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법정경위들에 의해 피고인 출입구를 거쳐 법정을 떠났다.

그러자 B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A씨는 “영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억압정이 실현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선고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해서 수차례 자살충동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심 선고 당시 법정에서 있었던 A씨의 지인들도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최초 단독 보도 본문

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는 점’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제보의 근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 본격 취재에 나섰다.

내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김 판사의 이러한 한 법정 두 선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법정 소란에 대한 입건 과정, 수사 과정, 검사의 기소 과정, 법원의 재판과정 없이 순간적으로 형을 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뉴스  구독중**'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변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

입력 2022.05.05 오전 7:00 · 수정 2022.05.05 오전 8:31 · 기사원문

 이상훈 기자 2  2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선고...5년간 대법원에서 지체
대법원 3부 오는 5월13일 오전 선고기일 지정

대법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 예고기사

   뉴스  구독중PICK **[단독]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입력 2024.08.31 오전 7:33 · 수정 2024.08.31 오전 7:33 · 기사원문

 이상훈 기자 36  99   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변복
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단독보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을 마친 나는 당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한 씨를 찾아갔다. 두 번째 면회 갔을 때 간신히 10분 간 만날 수 있었다. 그 짧은 사이 한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그의 지인을 통해서도 나에게 자신의 주장을 일부 전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 중에는 세밀한 부분, 이를테면 “판사가 선고 후 판사봉을 팡팡팡 두드렸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말도 있었지만 취재과정에서 충분히 걸렸다.

나는 법원에 반론권을 충분히 줬고 그들의 장황한 논리를 상세히 설명 들었다. 또한 당시 취재원으로 알고 지내던 대법원의 한 판사로부터 ‘기사를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보도 직전 그는 다른 일로 의정부에 들렀다면서 내게 연락하기도 했다.

취재를 시작하고 며칠 후인 2017년 1월17일 나는 <[단독] “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반향은 매우 컸다.

약 한 달 뒤인 2월14일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육설과 난동을 부려 법정정위들에 의해 퇴정했다가 다시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한 선고절차였다.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선고절차에 대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고지하고 상소할 기간을 고지한다. 단순히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선고가 끝난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장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규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1심서 김 판사가 번복하기 전의 최초 ‘징역 1년’이 아니라 ‘징역 2년’으로 선고한 것이 참 묘하다. 사법부의 명예 때문에 징역 1년과 3년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은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우연하게도 상고심 변호인은 평소 나의 유력 취재원이었다. 특히 사전에 내가 이 판결 번복사건에 대한 자문을 얻곤 하던 B변호사였다. 그는 국선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 수입으로 그가 얻는 수입료는 불과 수십여 만 원.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전에 내가 자문을 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장시간 진행되지 않았다. B 변호사는 나와 안부통화를 할 때면 이 사건에 대해 “대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언제까지 물어둘 것인지”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라고 말버릇처럼 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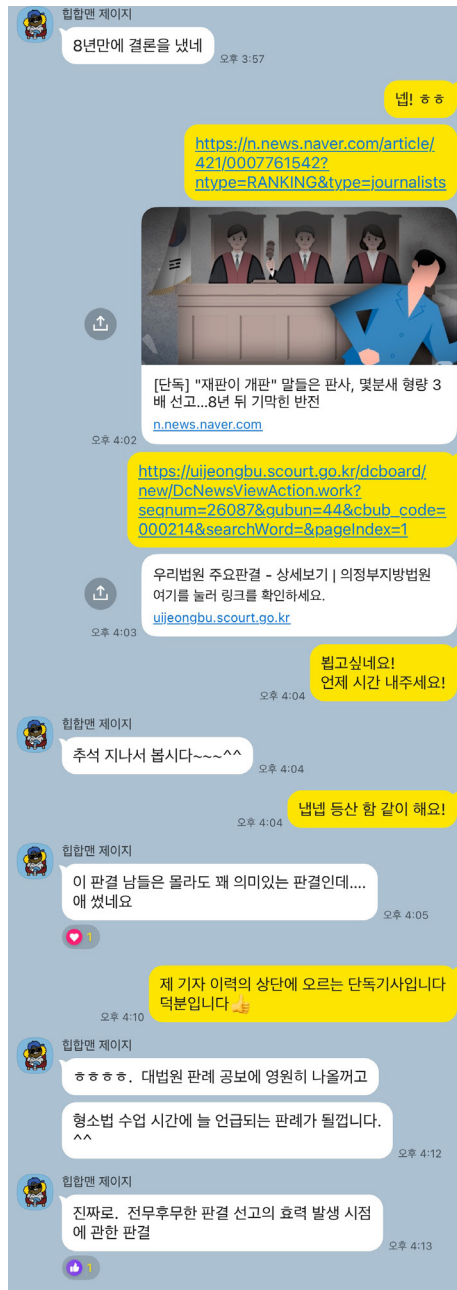
한 씨는 2017년 8월21일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취소가 결정됐고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출소시켜준 것이다. 이때 이미 상급법원의 최종 결론은 정해진 것이 아닐까 예측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13일 이 사건을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한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은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당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했다.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B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고심 판결에 5년이나 걸린 것은 유감이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을 확인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만약 그 기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등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 했더라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원심의 김 판사가



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제보자 A 씨와 나는 대화 내용

최초 낭독했던 그때 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 이상의 판결은 없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법정모욕적인 발언을 해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자,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원심의 판결 선고는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의 등산 친구이면서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A 씨,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엔 검사였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현재는 변호사다. A 씨는 파기환송심 직후 나에게 연락해 와서 “전무후무한, 판결 선고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판례 공보에 계속 나올 것이고, 형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언급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이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이후 나는 오래 알고 지내던 현직 C 판사와 오랜 만에 만나 식사와 티타임을 가졌는데, C 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의 허점에 대해 내게 귀띔해주었다. 보기 드문 희한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C 판사의 귀띔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이 지체된 것은 피고인 한 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까닭도 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 씨의 소재가 묘연하고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구인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이견 등으로 구인장은 얼마 뒤 취소했다.

C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불출석 상태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필석 재판으로 본인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1주일 이내 항소할 수도 있으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대로 선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형사]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곧바로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2017도3884)이 파기 환송한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4	조회
첨부파일	2022노1218_판결문.pdf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

■ 판결선고: 2024. 8. 30.

■ 판결요지

- 1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으나 재판장이 다시 피고인에게 법정으로 돌아올 것을 명한 다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징역 3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2530 판결)
- 환송 전 2심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한 것이 아님에도 그 이후에 벌어진 피고인의 난동이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한 것에는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 이에 환송 후 2심에서 최초 1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노1218 판결)

파기환송심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

이러한 사실(구인장 발부 주체)은 기사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법원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법원사건검색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자는 누가 주체가 돼 구인장을 발부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C 판사와의 만남은 또 다시 나의 취재 열정을 자극했다. 그는 내게 이러한 말을 해주면서 기자인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취재에 나서리라는 것도 짐작했을 터이다. 그는 또 대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전 20여 명의 판사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고 귀띔해줬다. 의견을 낸 대부분의 판사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을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전언으로 들었을 뿐이다.

판결 과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 수차례 송사를 면하지 못하는 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또 하나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현직 판사에 의해 발견됐고, 또 다시 내게 보도의 기회가 온 것이다.

‘잘못 발부된 구인장’에 대한 보도를 두고 나는 고민했다(열정이 앞섰던 7년 전의 나는 고민할 것 없이 당장 취재하고 보도했을 테지만). 나는 해당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과거 살인미수교사 혐의, 무고 혐의로 기소됐던 한 씨의 범죄 전력도 되짚어보았다.

한 씨가 파기환송심에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점(이를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그가 판결절차에 대한 절대적 불신감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종 판결 법정에 끝까지 나오지 않은 한 씨의 소홀함이, 나로서는 ‘저런 인물을 위해 굳이’라는 생각이 들며 취재 의지가 사그라들었다), 지체된 정의일지라도 사실관계를 결국 원점으로 되돌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는 ‘파기환송심 과정서 잘못 발부된 구인장’에 대해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년 만에 ‘죄의 적절한 대가’를 바로 잡은 귀한 판결인데, 결가지 이유로 지적하는 것은 소모적이라 판단했다. 내 결정에 아쉬움도 일부 있다. 그렇기에 이렇게 후일담으로 남겨둔다. 📌

뉴스1 이상훈 기자